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6	기관	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	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	법령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관 확대 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동법시행령」 개정 <p>※ 종전 정부투자기관 등 일부기관에만 적용 - 전액출자/출자법인, 50%이상 출자·출연법인 및 개별 공공법인 중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</p>	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	06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공포(06.1.1시행) -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수의계약 허용 	법 제23조 제2항
소관부처	행정자치부		06.3.14 ~07.1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 * 공유재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처분 가능 	
담당부서	회계공기업과	혁신도시특별법 제23조2항			